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1. 10. 21.>

등록업무 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(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억원)

등록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투자대상자산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	최저 자기자본
3-14-1	일반 사모집 합투자업	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	법 제249조의 2에 따른 적격 투자자	10
5-1-1	투자자문업	증권, 장내파생상품, 장외파생 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 른 투자대상자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	2.5
5-21-1	투자자문업	집합투자증권, 파생결합증권, 환매조건부 매매, 제6조의2제3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, 파생 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	1
6-1-1	투자일임업	증권, 장내파생상품, 장외파생 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	15
6-1-2	투자일임업	증권, 장내파생상품, 장외파생 상품 및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	전문투자자	5

비고

1.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 제2호(3-14-1의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를 말한다)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(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2.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